

약관(일부)변경 보고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BEST 지수연동 12M 채권투자신탁 CH-6

2. 약관개요 : 펀드 설정현황 (2004. 5. 21 현재)

펀드명	설정일	설정잔고(좌)	수익자수
BEST 지수연동 12M 채권 CH-6	2003.12.31	1,000	1

3. 약관변경 주요내용

변경 내용 : 신탁보수 변경

4. 약관변경 내용

현행	변경(안)
<p>제22조(투자신탁보수)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중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의 평균잔액(매일의 투자신탁재산 순자산총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중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 위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7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2.3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	<p>제22조(투자신탁보수)</p> <p>③ (좌동)</p> <p>1. 위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7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4.0 3. 수탁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3</p>

부 칙

(시행일) 이 약관의 변경은 2004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한다.

5. 약관변경절차

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개월이상 게시 및 수익자에게 개별 통보